

[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]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- 제 출 일 : 2001. 7. 16
-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1. 7. 23(수정안 2001. 8. 29)

다. 의안번호 : 제 25 호

라. 상정일자 : 2001. 9. 3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제2단계 읍·면 기능전환 시행으로 군 본청에 이관 사무,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대민행정 집중수행, 주민불편 해소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를 위함.

나. 주요골자

(한시기구 설치)

- 기 구 명 : 주민자치지원단
- 주요담당사무
읍·면 기능전환 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제2단계 읍·면 기능전환에 따라 읍·면 기능전환 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,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, 군 본청에 이관되는 사무·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민행정 집중수행, 주민불편 해소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보건진료소 중 진료실적이 부진하고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2개소

를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었으나,

- 주민들의 의견과 농촌지역 의료혜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, 당초 2개소를 폐지할 계획이었던 진료소는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읍·면 기능전환 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「주민지원담당관」의 명칭을
-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집행적 성격이 강한 「주민자치지원단」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수정안으로서,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기재생략

5. 토론요지

- 기재생략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본 개정 조례안은 제2단계 읍·면 기능전환 시행으로 군 본청에 이관 사무,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대민행정 집중수행, 주민불편 해소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,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.

8. 소수의견의 요지

- 기재생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기재생략